

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21.
제출자 :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평창군포상조례중 평창군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모범공무원상, 향토주인상, 향토일꾼상 등이 중첩되고 있고, 조례의 제정목적등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여 “평창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”을 삭제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삭제(안 제4조, 제7조)
- 나. 공적심사위원회구성을 부군수, 기획실장, 자치행정과장, 종합민원실장, 환경복지과장, 임업경영과장, 건설과장으로 한다(안 제9조)

□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

평창군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7조의 “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” 을 삭제한다.

제9조제③항중 부위원장인 “내무과장” 을 “기획실장” 으로, 위원은 “기획
사회·산업·산림·건설” 을 “자치행정·종합민원실·환경복지·임업경영·
건설과장” 으로 하고, 간사는 “서무계장” 을 “서무담당주사” 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